

신원증명 확인항목

「산림조합법」제41조 및 산림조합중앙회 인사규정 제8조 관련]

□ 임직원의 겸직 금지

- 임용 시 산림조합법 제41조에 따른 중앙회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재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

□ 직원의 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부패행위 등으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-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본회 및 회원조합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취소된 사람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신원증명확인각서

본인은 귀 회 「2022년 전국 산림조합 금융분야 일반직(8급)-공개 경쟁부분」 임용전형 응시자로서 붙임 각 항목에 대한 부적격자가 아니며 만일 본 각서 제출이후 붙임 각 항목에 대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자격상실로 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신청인 주 소 :

주민등록번호 :

성 명 :

(인)

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귀하